

제 109호

행정명령(EXECUTIVE ORDER)

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, SULLIVAN, ULSTER 및 WESTCHESTER 카운티의 재난 선언 지속

본인은 2012년 10월 26일에 뉴욕주의 모든 62개 카운티에 재난 비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 제47호를 발령하였습니다;

2013년 4월 24일에 본인은 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, Sullivan, Ulster 및 Westchester 카운티의 재난 선언을 90일간 지속하는 행정명령 제98호를 발령하였습니다;

2012년 10월 29일부터 그후 지속된 기간 동안 슈퍼폭풍 Sandy는 뉴욕주 전역에 강풍과 폭우를 퍼부었으며 기록적인 침수와 심각한 해일을 일으켰습니다. 이로 인한 피해는 주의 특정 지역들이 회복하기 위해 아직도 노력하고 있습니다;

슈퍼폭풍 Sandy 동안에 또는 그 결과로 메트로폴리탄교통청과 그 자회사 또는 계열사(집합적으로 "MTA")의 설비들이 커다란 손상을 입었습니다;

2013년 5월 17일에 본인은 필요한 중요 수리, 재건, 재활 및 완화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하고 연방지원 자금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MTA가 계약 체결을 신속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공공기관법(Public Authorities Law)의 조항을 정지하는 행정명령 제99호를 발령하였습니다;

2013년 6월 18일에 본인은 행정명령 제99호로 명령된 공공기관법의 조항 정지를 지속하는 행정명령 제101호를 발령하였습니다;

행정법 제29-a조에는 법률의 정지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으나 모든 관련 사실 및 형편을 재고려하여 정지를 추가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;

이제, 그러므로 본인 **ANDREW M. CUOMO** 뉴욕주 지사는 행정법 제2-B조의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, 그리고 모든 관련된 사실 및 상황을 재고려한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

내립니다:

1. 행정명령 제47호에 의해 명령되고 행정명령 제98호에 의해 지속된 재난 선언을 Bronx, Kings, Nassau, New York, Orange, Putnam, Queens, Richmond, Rockland, Suffolk, Sullivan, Ulster 및 Westchester 카운티에 대해 90일간 지속합니다;
2. 행정명령 제99호에 의해 명령되고 행정명령 제101호에 의해 지속된 법률의 정지는 2013년 8월 15일까지 지속됩니다.

2013년 7월 15일 Albany시에서 주 옥새 및 본인의

자필로 서명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